

# 글로벌 바이오헬스-K 펀드 사업공고(안)

한국수출입은행(이하 ‘수은’)은 가칭 「글로벌 바이오헬스-K 펀드」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## 1. 추진 배경

- ICT 융합 보건의료·제약산업 분야 국내 기업의 수출촉진, 해외진출사업, 해외투자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목적

## 2. 선정 개요

항목	세 부 내 용
수 은 투자약정 금 액	○ 750억원 이내 - 투자수요, 운용사의 출자 요청 규모 및 정책금융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
선 정 운용사수	○ 3개사 이내 - 제안내용 및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금액 결정 * 심사 결과에 따라 운용사를 1개만 선정하거나,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. (이 경우, 나머지 운용사 선정 시기는 하반기로 연기)
투자기구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)
운용사의 신청자격	○ 관련 법규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하며, - 공고일 현재 설립된지 3년이 경과한 법인 - 공고일 현재 운용중인 펀드 약정 총액 1천억원 이상인 법인
운 용 사 선정방법	○ 수은 홈페이지(www.koreaexim.go.kr) 공고 이후 제안서를 접수 하여 수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- 예비평가(3배수 이내 선정) → 구술심사(개별 PT)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
접 수 마감일	○ 2020년 4월 17일(금) (16시 限)
최 종 선정일	○ 2020년 5월 중
결성시한	○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

### 3. 투자 분야

항 목	내 용
주목적 투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2020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」에 따른 <u>건강·진단, 정보통신, 전기·전자, 센서·측정 분야 해당 사업*</u>으로서,</li> <li>-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<u>국내기업의 수출입, 해외투자, 해외사업</u>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<u>해외진출</u>에 해당하는 사업</li> <li>* 「2020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(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, '20. 1월)」 품목 내에서 운용사가 제안 가능하며, 수은과 협의하여 결정</li> </ul>
주목적 의무투자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수은 투자금액의 2배 이상</u></li> </ul>

### 4. 주요 투자조건

항목	내용
최 소 결성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수은 투자약정금액의 400%</u></li> <li>* 펀드 규모가 최소 결성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은 투자약정금액 및 최소 결성금액을 각각 75%까지 하향 조정 가능</li> </ul>
수 은 투자약정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펀드 약정총액의 25% 이내</li> </ul>
운용사 투자약정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펀드 약정총액의 1% 이상</li> <li>- 최소 우선손실충당비율 없음*</li> <li>* 단, 운용사 및 타기관의 우선손실충당 제안시 심사에 반영</li> </ul>
존속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</li> </ul>
투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</li> </ul>
관리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약정금액(투자기간), 투자잔액(투자기간 이후)의 연 2% 이내</li> </ul>
성과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초과수익의 20% 이내</li> <li>- 기준수익률 연 7% 이상</li> </ul>

항목	내용
납입방식	○ 수시납(Capital Call)
펀드결성 마감방식	○ 추가 증액방식(Multiple Closing) 등 협의 가능
재인출 제한	○ 투자 후 회수한 투자금액은 재투자 불가 - 투자기간 경과 이후, 회사운영비용·관리보수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, 출자약정 잔액 한도 내 출자금 납입 요청(capital call) 가능
투자자제한	○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- 단, 개인투자자(핵심운용인력 등)의 펀드 투자가 책임운용 강화에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은과 협의하여 결정
운용인력	○ 핵심운용인력 최소 3인 이상 참여 - 펀드 결성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(또는 정관)에 기재되어야 하며, 이탈방지 및 책임 운용을 위한 조항 협의 필요
기타	○ 투자조건 중 위탁운용사 투자약정비율, 펀드 존속기간, 관리보수, 성과보수는 각각의 조건과 최종선정된 위탁운용사가 제안한 수준을 감안하여 개별협의를 통해 결정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타 투자자가 펀드에 참여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 등은 수은과 개별협의를 통해 결정

## 5. 지원방법 및 선정일정

- 수은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파일을 **지정된 이메일 주소 및 접수처로 접수기간 중 제출**
- 예비평가 실시 후, 선정예정 운용사 수의 **3배수 이내 구술심사 실시**
  -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 앞 개별통보
  - 별도 PT자료 10부 제출(본문기준 20페이지 이내), 발표 당일 별도 지참
- 제안서 접수 마감일 : '20. 4. 17(금) (16시 限)
- 최종 선정일 : '20. 5월 중

## 6. 접수처

- 한국수출입은행 투자금융실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, 7층), [fid@koreaexim.go.kr](mailto:fid@koreaexim.go.kr)

## 7. 선정 배제·취소 및 제재 사항

### □ 선정 배제

- 운용사가 현재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,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
- 최근 2년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운용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, 대표펀드 매니저 또는 운용사 대표이사가 과거 5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의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 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또는 중대한 오류 누락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### □ 선정 취소

- 운용사가 타 투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당행이 결정한 투자조건을 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정관 협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결성시한 내 펀드조성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

### □ 제재 사항

- 다음의 경우,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수은의 신규 투자를 제한
  -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
  - 펀드 존속기간 중 해당 펀드의 정관이나 약관 또는 규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배한 경우
- 다음의 경우,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은의 신규 투자를 제한
  - 운용사가 타 투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
※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,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**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신고센터(홈페이지 > 열린경영 > 윤리경영 > 신고센터)**나 **윤리준법실 (☎02-6255-5446)**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